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 안 번 호	59

제안연월일 : 2022. 10. .
제 안 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2조(이동지원센터)에 의한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향후 위탁운영을 위해 평창군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위탁사업 개요

○ 사 업 명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 최초운영 : 2014. 10.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 운영예산 : 360,000천원(기금85,929/군비274,929) ※2022년 기준
○ 현수탁자 : (사)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평창군지회
○ 사업내용
-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사항 : 차량운행 6대, 운영인원 8명
- 이용요금 수납 등 회계업무 수행

3. 향후계획

○ 위탁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선정
○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2. 10월
○ 수탁자 선정 심의 및 위탁계약 체결 : 2022. 11월 ~ 12월

4. 기대효과

○ 교통수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봉사정신을 가진 기관(단체)에 위탁함으로써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안전한 이동권 보장

○ 운전원 및 사무원의 서비스마인드 향상 등 효율적인 직원 관리와 사무운영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사업의 전문성 제고

5. 관련자료

❍ 관련법령 1부. 끝.

［관계법령 발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략)

⑨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⑩ 특별교통수단과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2조(이동지원센터)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센터(이 조례에서 “이동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경우에는 특

별교통수단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용대상자의 등록신청 접수

2. 신청인의 자격심사 및 확인

3. 운행 및 관리 운영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운전자와 관련자에 대한 안내 · 상담 및 교육

6.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군수는 이동지원센터를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군 소재 다음 각 호의 기관 · 단체 등 중에서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정한다.

1. 공공기관

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해당 사업자단체

3. 해당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단체 또는 개인